

NEWSLETTER 984

Apr 24, 20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이 4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내용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 수출물품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수행 주체와 상관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중소 제조기업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출금액 뿐만 아니라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으로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환급 신청 편의 제고
-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II.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 확대 (§7조의2 신설, 별표2, 별표 4, 별지 제3호, 별지 제24호)
 - 국내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 등이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 포장용품에 대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2(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 등 신청)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 환급 등 신청인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포장용품에 대해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국내 공급금액)으로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31③ 신설)

- 생산자는 국내 공급금액을 사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 ② (생략) <신설>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생산자는 수출금액 또는 수출자 등에게 공급한 수출 물품의 국내 공급금액(국내 공급금액이 수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국내 공급금액이어야 한다.)을 사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월 단위)을 고려하여, 국내거래 양도일자 확인 서류 개선 (§49 제2호가목 단서 신설)

- 세금계산서 월 단위 발행 업체*의 국내거래 양도일자(공급일자)확인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등 추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생략)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공급일 나. ~ 라. (생략)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 ----- ----- 1. (현행과 같음)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u>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공급일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공급일 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u> 나. ~ 라. (현행과 같음)

□ 기타 개선사항

-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 소급 적용 신청 항목 추가 (§32④단서, 별지 제16호)
-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하는 견본용 물품(규칙제2조제1항제4호) 등에 대한 수출 사실 확인 서류 명확화(별표1)
 - ※ (현행) 수출신고서 → (개선) 수출신고서 및 수출계약용 확인 서류
-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환급업체도전자문서로 환급신청기관 신청 (§6, 별지 제2호)
- 수불→출납 용어 정비 (§11, §54, §99), 계좌정보 서식 정비(별표2, 별표2의4, 별지 제5호의2) 등

Ⅲ. 시행일자

2024. 4. 22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붙임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대비표

[붙임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 Contact



서경은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2-6011-3033
E keso@esein.co.kr



조민지 관세사 / Manager

T 02-6929-3474
E mjcho@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